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 추가〉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04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9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7.
- (3) 회 부 일 : 2024.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③ ~ ⑥ (생략)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을 지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무장애 관광(barrier free tourism)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열린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¹⁾

1) 류재숙, & 임재필. (2022). 장애인 관광활동의 기대, 제약과 협상 및 행동의도 간 구조관계 연구. 관광연구

- 무장애 관광이란 ‘배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²⁾을 근거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분야에서의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하기 편리하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함.³⁾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중 대부분은 아직까지 관광·여행 여건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으며,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과반수에 가까운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이동 편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⁵⁾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 부처 차원에서 관광사업 실시 및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

저널, 36(1), 133-148.

2) 196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장벽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와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free)’를 결합한 ‘장벽이 없는 디자인’을 의미함.

3) 허병선, & 윤지민.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장애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분석-AHP 기법의 적용. 관광연구논총, 33(1), 43-68.

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018 상반기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정사항으로는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⁶⁾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 법정사항 중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아래에서 보듯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참고자료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관광 분야 추진과제 내용).

즉,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앞서 언급한 법정사항을 포괄하여 9대 정책 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9대 정책 분야의 하나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문화라는 범주 안의 여러 하위개념 중 하나인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해서만 다시 법률에서 특정하여 열거하는 것은 문화의 범주 내 다른 하위개념과 구별되어야 할 설득력이 있어

6)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개정안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① 개정 시점 이후, 2028년부터 새로운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라는 점, ② 현행법 제10조의2제4항7)에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립하는 경우부터”라는 표현은 “~변경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관광’은 이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만약 ‘관광’을 포함할 경우, ‘예술’, ‘체육’, ‘여가’ 등 문화 분야의 다른 영역도 포함해야 하지만, 이와 같이 세부사항을 열거하는 것은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7)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인은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등 관광의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문화적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며, 관광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관광 분야 추진과제 내용〉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23~27) 관광 분야 추진과제

☐ 장애인 관광 접근성 제고

- 관광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열린관광지 지속 확대 추진

* 열린관광지 조성 수(누적) : ('23) 132개소 → ('27) 252개소

- 물리적 접근성 개선 외에도 관광취약계층 특화 관광콘텐츠 조성, 既 조성 시설 모니터링 등 열린관광지 관리·운영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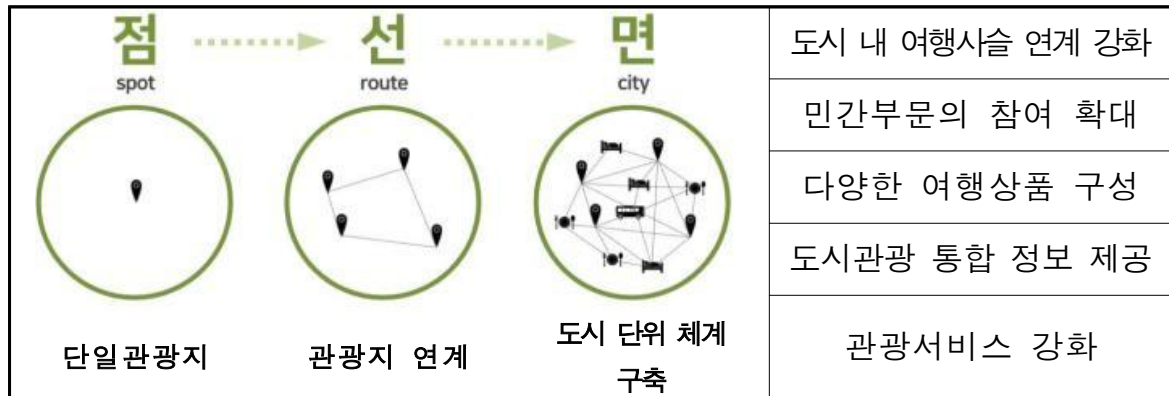
☐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 관광지 및 관광지와 연계한 편의시설의 연계망 개선을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지정 및 전국단위 확대 조성 추진

*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수(누적) : (~'23) 1개(강릉시) → ('27) 13개

- 관광취약계층의 주요 관광거점 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전반적인 무장애 관광교통 환경 개선(버스·미니밴 도입 및 운영) 추진
- 무장애 관광도시 인프라를 중심으로 무장애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광상품 활성화 추진
 -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관광 안내 및 관광활동에 필요한 활동 보조기기 보완 및 대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도시 내 관광자원, 편의시설 등을 연계한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슬 개념 >



□ 장애인 관광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 지속 지원 및 종사자 인식개선,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행복나눔여행 지속 지원 추진(매년 500명 규모)
 - 여행사 등 관광업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 강화
 - 연구용역 수행('23)을 거쳐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및 관광취약계층 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매년 무장애 관광정보 신규 1,000건 발굴하고, 장애유형별 체험콘텐츠 탑재 등 무장애 관광플랫폼 고도화 추진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우호적 사회환경 조성 추진